

1.약관명: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2.시행일: 2026. 10. 19

3.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부

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제1조 거래조건	제1조 거래조건																																																																																																			
<table><tr><td>대출과목</td><td>내집마련디딤돌대출</td><td>대출용도</td><td>구입</td></tr><tr><td>대출금액</td><td colspan="3">금 원정</td></tr><tr><td>대출기간</td><td colspan="3">() 년</td></tr><tr><td>대출개시일</td><td colspan="3">(생 략)</td></tr><tr><td>대출만료일</td><td colspan="3">(생 략)</td></tr><tr><td rowspan="6">이자율</td><td>☐ 만기까지 고정금리</td><td colspan="2">(생 략)</td></tr><tr><td>☐ 10년 고정 후 변동</td><td colspan="2">(생 략)</td></tr><tr><td>☐ 5년 주기 변동</td><td colspan="2">(생 략)</td></tr><tr><td>☐ 변동금리</td><td colspan="2">(생 략)</td></tr><tr><td>☐ 신생아 특례대출 (고정금리)</td><td colspan="2">· 특례금리 적용 기간 중 연 ()%* *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신생아 추가 출산시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최장 15년 특례금리 적용 가능)</td></tr><tr><td colspan="3">(이 하 생 략)</td></tr><tr><td rowspan="3">(기본약관 제3조제2항 선택)</td><td colspan="3">(생 략)</td></tr><tr><td colspan="3">(생 략)</td></tr><tr><td colspan="3">※ 만기까지 고정금리 선택 시 0.3%p,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0.2%p, 5년주기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 금리적용 방식에 따른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 고정금리 적용 종료 후 변동금리 전환 시에도 가산금리 부과는 유지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신청자의 소득이 최고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0.3%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단,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최고 소득구간 초과 시 최고 소득구간 금리 적용) ※ <신 설></td></tr></table>	대출과목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용도	구입	대출금액	금 원정			대출기간	() 년			대출개시일	(생 략)			대출만료일	(생 략)			이자율	☐ 만기까지 고정금리	(생 략)		☐ 10년 고정 후 변동	(생 략)		☐ 5년 주기 변동	(생 략)		☐ 변동금리	(생 략)		☐ 신생아 특례대출 (고정금리)	· 특례금리 적용 기간 중 연 ()%* *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신생아 추가 출산시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최장 15년 특례금리 적용 가능)		(이 하 생 략)			(기본약관 제3조제2항 선택)	(생 략)			(생 략)			※ 만기까지 고정금리 선택 시 0.3%p,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0.2%p, 5년주기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 금리적용 방식에 따른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 고정금리 적용 종료 후 변동금리 전환 시에도 가산금리 부과는 유지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신청자의 소득이 최고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0.3%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단,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최고 소득구간 초과 시 최고 소득구간 금리 적용) ※ <신 설>			<table><tr><td>대출과목</td><td>내집마련디딤돌대출</td><td>대출용도</td><td>구입</td></tr><tr><td>대출금액</td><td colspan="3">금 원정</td></tr><tr><td>대출기간</td><td colspan="3">() 년</td></tr><tr><td>대출개시일</td><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대출만료일</td><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 rowspan="6">이자율</td><td>☐ 만기까지 고정금리</td><td colspan="2">(현행과 같음)</td></tr><tr><td>☐ 10년 고정 후 변동</td><td colspan="2">(현행과 같음)</td></tr><tr><td>☐ 5년 주기 변동</td><td colspan="2">(현행과 같음)</td></tr><tr><td>☐ 변동금리</td><td colspan="2">(현행과 같음)</td></tr><tr><td>☐ 신생아 특례대출 (고정금리)</td><td colspan="2">· 특례금리 적용 기간 중 연 ()%* *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신생아 추가 출산시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최장 20년 특례금리 적용 가능)</td></tr><tr><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 rowspan="3">(기본약관 제3조제2항 선택)</td><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 colspan="3">※ 만기까지 고정금리 선택 시 0.3%p,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0.2%p, 5년주기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 금리적용 방식에 따른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 고정금리 적용 종료 후 변동금리 전환 시에도 가산금리 부과는 유지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신청자의 소득이 최고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0.3%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단, 사전청약 당첨자 및 뉴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디딤돌 대출의 경우 적용 제외) ※ 신혼부부 합산 소득기준 초과자의 경우 만기별 최고금리에 0.3%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td></tr></table>	대출과목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용도	구입	대출금액	금 원정			대출기간	() 년			대출개시일	(현행과 같음)			대출만료일	(현행과 같음)			이자율	☐ 만기까지 고정금리	(현행과 같음)		☐ 10년 고정 후 변동	(현행과 같음)		☐ 5년 주기 변동	(현행과 같음)		☐ 변동금리	(현행과 같음)		☐ 신생아 특례대출 (고정금리)	· 특례금리 적용 기간 중 연 ()%* *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신생아 추가 출산시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최장 20년 특례금리 적용 가능)		(현행과 같음)			(기본약관 제3조제2항 선택)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만기까지 고정금리 선택 시 0.3%p,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0.2%p, 5년주기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 금리적용 방식에 따른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 고정금리 적용 종료 후 변동금리 전환 시에도 가산금리 부과는 유지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신청자의 소득이 최고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0.3%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단, 사전청약 당첨자 및 뉴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디딤돌 대출의 경우 적용 제외) ※ 신혼부부 합산 소득기준 초과자의 경우 만기별 최고금리에 0.3%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1)신생아 특례 디딤돌 특례금리 적용 기간 연장 2) 뉴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 요건 완화 3)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 초과자 대상 가산금리 적용 기준 신설
대출과목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용도	구입																																																																																																	
대출금액	금 원정																																																																																																			
대출기간	() 년																																																																																																			
대출개시일	(생 략)																																																																																																			
대출만료일	(생 략)																																																																																																			
이자율	☐ 만기까지 고정금리	(생 략)																																																																																																		
	☐ 10년 고정 후 변동	(생 략)																																																																																																		
	☐ 5년 주기 변동	(생 략)																																																																																																		
	☐ 변동금리	(생 략)																																																																																																		
	☐ 신생아 특례대출 (고정금리)	· 특례금리 적용 기간 중 연 ()%* *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신생아 추가 출산시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최장 15년 특례금리 적용 가능)																																																																																																		
	(이 하 생 략)																																																																																																			
(기본약관 제3조제2항 선택)	(생 략)																																																																																																			
	(생 략)																																																																																																			
	※ 만기까지 고정금리 선택 시 0.3%p,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0.2%p, 5년주기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 금리적용 방식에 따른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 고정금리 적용 종료 후 변동금리 전환 시에도 가산금리 부과는 유지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신청자의 소득이 최고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0.3%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단,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최고 소득구간 초과 시 최고 소득구간 금리 적용) ※ <신 설>																																																																																																			
대출과목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용도	구입																																																																																																	
대출금액	금 원정																																																																																																			
대출기간	() 년																																																																																																			
대출개시일	(현행과 같음)																																																																																																			
대출만료일	(현행과 같음)																																																																																																			
이자율	☐ 만기까지 고정금리	(현행과 같음)																																																																																																		
	☐ 10년 고정 후 변동	(현행과 같음)																																																																																																		
	☐ 5년 주기 변동	(현행과 같음)																																																																																																		
	☐ 변동금리	(현행과 같음)																																																																																																		
	☐ 신생아 특례대출 (고정금리)	· 특례금리 적용 기간 중 연 ()%* *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신생아 추가 출산시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최장 20년 특례금리 적용 가능)																																																																																																		
	(현행과 같음)																																																																																																			
(기본약관 제3조제2항 선택)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만기까지 고정금리 선택 시 0.3%p,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0.2%p, 5년주기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 금리적용 방식에 따른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 고정금리 적용 종료 후 변동금리 전환 시에도 가산금리 부과는 유지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신청자의 소득이 최고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0.3%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단, 사전청약 당첨자 및 뉴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디딤돌 대출의 경우 적용 제외) ※ 신혼부부 합산 소득기준 초과자의 경우 만기별 최고금리에 0.3%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제6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약 ① (생 략) ②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u>본인 및 배우자</u>의 연간 소득합계액(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소득기준)이 ()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③~⑦ (생 략)	제6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약 ① (현행과 같음) ②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u>본인 및 배우자(부부 중 1인 소득 적용자는 대출신청인)</u>의 연간 소득합계액(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소득기준)이 ()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③~⑦ (현행과 같음)	부부 중 1인 소득 적용자 소득기준 확약내용 정비
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 ① (생 략) 1 ~ 4. (생 략) 5.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5.11억원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u>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적용 제외</u>)	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5.11억원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u>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 및 뉴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디딤돌 대출의 경우 적용 제외</u>)	뉴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 요건 완화
제15조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또는 금리변경)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 ① ~ ④ (생 략) ⑤ <u>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u>	제15조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또는 금리변경)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 및 뉴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디딤돌 대출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u>	